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합5945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병기

피 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형준, 정덕, 김범석

변 론 종 결 2022. 4. 1.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F이 2020. 4. 24. 피고 C에게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 2020. 4. 27. 피고 D, E에게 한 각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를 각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131,428,500원, 원고 B에게 98,571,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E은 각 원고 A에게 28,571,400원, 각 원고 B에게 21,428,5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F이 2020. 4. 24. 피고 C에게 한 채무 230,000,000원의 변제행위, 2020. 4. 27. 피고 D, E에게 한 각 채무 5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131,428,500원, 원고 B에게 98,571,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E은 각 원고 A에게 28,571,400원, 각 원고 B에게 21,428,5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F의 친구들이고, 피고 C은 F의 처, 피고 D, E은 F의 처형들이다.

나.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원고 A은 2006. 6.경 400,000,000원을, 원고 B은 2006. 7. 27. 150,000,000원, 2006. 11. 13. 15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F에게 각 대여하였다. 이후 F은 2015. 11. 6.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400,000,000원에 약 9년 동안의 배당금, 이자 등을 합한 800,000,000원을, 원고 B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에 약 9년 동안의 배당금, 이자 등을 합한 600,000,000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들은 2017. 6. 16. F을 상대로 이행각서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817)를 제기하여 2018. 1. 18. 'F은 원고 A에게 80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F에 대한 채권

피고 C은 2008. 6. 24.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계좌번호 1 생략)받아 이를 F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08. 5.경 50,000,000원을, 피고 E은 2008. 5. 23.경 55,000,000원을 F에게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

라. F의 H조합 조합원 지위 취득

F은 2014. 8. 17. 구 과천시 I아파트 J호(이하 '종전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종전 아파트에 관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되었다. F은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43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7. 11. 종전 아파트에 관하여 K 앞으로 채권최고액 525,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어서 같은 날 H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종전 아파트는 2017. 9. 1. 멸실을 이유로 2017. 9. 26. 그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마. 이 사건 압류명령과 F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취득

원고들은 2018. 6. 22. 채무자 F, 제3채무자 H조합으로 하여 F이 H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일체에 관한 압류명령을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57641)하여 2018. 7. 9. F의 H조합에 대한 아파트 수분양권과 청산금 채권에 관한 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8. 7. 13.경 제3채무자인 H조합에 송달되었다.1) F은 2019. 8.경 H조합과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건축사업에 따라 과천시 L 등에 신축될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바. F의 청산금 수령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F은 2020. 4. 23.경 H조합에 청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20. 4. 24. H조합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청산금 467,733,05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C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30,000,000원(이하 ‘제1 송금행위’라 한다)을, 2020. 4. 27. 피고 D, E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각 50,000,000원(이하 피고 D에 대한 송금행위를 ‘제2 송금행위’라 하고, 피고 E에 대한 송금행위를 ‘제3 송금행위’라 하며, 위 각 송금행위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F의 위 예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6. 25. F 명의의 위 계좌에 남아 있던 청산금 합계 30,643,409원을 추심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F을 고소하였으나, F은 2020. 10.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사. H조합의 F에 대한 채권

H조합은 2020. 6. 22. F을 상대로 ‘H조합은 이 사건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F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F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청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바람에 H조합이 착오로 이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산금 467,733,050원 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차전5459)하여 2020. 6. 24. ‘F은 H조합에게 위 청산금을 포함한 533,500,0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H조합은 2020. 7. 31. F이 K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원리금 합계 443,106,7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련 경매절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서는 2020. 11. 25.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H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5,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20. 11. 26. 원고들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P,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21. 6. 22.경 대금 1,530,099,999원에 매각되었다.

H조합은 2021. 2. 2.경 근저당권자로서 그 피담보채권 443,106,707원을 신고한 것 이외에도 위 지급명령에 따른 F에 대한 청산금 반환 채권 467,733,050원 등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 A은 2021. 7. 26.경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신고할 당시 자신이 F의 채권 240,299,091원 상당2) 을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채권액에서 제외하였고, 원고 B은 2021. 7. 26.경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신고할 당시 자신이 F의 채권 180,224,317원 상당3) 을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채권액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2021. 8. 24.경 배당절차에서 H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그 피담보채권 443,106,707원을 선순위로 배당받은 것 이외에도 일반채권자로서 원고들 등과 안분배당으로 215,569,663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A은 440,618,909원, 원고 B은 330,464,182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8, 20 내지 26호증, 을 제8,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과 F의 무자력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원고 A의 F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1,168,564,114원 이상⁴⁾ 이고, 원고 B의 F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867,423,085원 이상⁵⁾ 이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F의 적극재산으로는 1,056,893,293원 상당(= 시가 1,500,000,000원⁶⁾ - 피담보채무액 443,106,707원⁷⁾)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H조합의 착오로 송금된 청산금 467,733,050원에 대한 예금 채권 등 합계 1,524,626,343원(= 1,056,893,293원 + 467,733,050원)이 있었으나,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만으로도 소극재산이 이를 초과하는 2,035,987,199원(= 1,168,564,114원 + 867,423,085원)에 이르러 F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F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은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멸시효이익 포기행위 취소와 그 가액배상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 등 참조).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 C은 2008. 6. 24.경 250,000,000원을, 피고 D은 2008. 5.경 50,000,000원을, 피고 E은 2008. 5. 23.경 55,000,000원을 F에게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 F은 위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0. 4. 24.경 피고 C에게 제1 송금행위를, 2020. 4. 27.경 피고 D에게 제2 송금행위를, 같은 날 피고 E에게 제3 송금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들은 F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피고들의 F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갑 제19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 C이 F에 대한 대여금 250,000,000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9. 9. 24. 2,000,000원, 2009. 10. 24. 2,000,000원, 2009. 11. 25. 1,700,000원, 2011. 1. 11. 1,000,000원, 2011. 1. 12. 3,405,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F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고 C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서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 송금행위는 위 마지막 송금일인 2011. 1. 12.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Q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2018. 1. 15.경 피고 E에게, 2018. 1. 20.경 피고 D에게 각 자신의 채무 전체를 승인하는 취지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F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고 D, E에 대하여 각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2, 3 송금행위는 위 각 채무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F의 피고들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처 또는 처형들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변제행위 취소와 그 가액배상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F의 처, 피고 D, E은 F의 처형들이고, F은 H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청산금 467,733,050원 중 합계 330,000,000원을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갑 제8, 10,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과 피고들의 통모사실이나 사해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위 각 변제의 재원이 된 위 청산금은 H조합의 착오로 송금된 것으로서 F이 다시 H조합에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 점,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H조합은 F에 대한 위 청산금 지급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미 위 청산금 상당액을 추심하였거나 추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이경민, 판사 이현지

1) 당초 이 사건 압류명령 결정문 별지에는 원고들의 청구채권내역이 누락되어 2018. 7. 16. 별지를 교체하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정결정도 2018. 7. 19.경 H조합에 송달되었다. 한편, 채무자인 F에게는 이 사건 압류명령이 공시송달되어 2018. 10. 6.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이에 관하여 원고 A은 “O은행 추심금 17,510,519원, H조합 추심금 222,788,572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갑 제24호증).

3) 이에 관하여 원고 B은 “O은행 추심금 13,132,889원, H조합 추심금 167,091,428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갑 제25호증).

4) 구체적으로 원고 A의 F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제1 송금행위 당시 1,168,564,114원[= 원금 800,000,000원 + 지연손해금 368,564,114원(=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465,753원(= 800,000,000원 × 0.05 × 132일 ÷ 365일)(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20. 4. 2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4,098,361원(= 800,000,000원 × 0.15 × 2 + 800,000,000원 × 0.15 × 348일 ÷ 366일))]이고, 그로부터 3일 후인 제2, 3 송금행위 당시 1,169,547,720원[= 원금 800,000,000원 + 지연손해금 369,547,720원(=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465,753원 +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20. 4. 2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5,081,967원($= 800,000,000\text{원} \times 0.15 \times 2 + 800,000,000\text{원} \times 0.15 \times 351\text{일} \div 366\text{일}$))이다.

5) 구체적으로 원고 B의 F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제1 송금행위 당시 876,423,085원[$= \text{원금 } 600,000,000\text{원} + \text{지연손해금 } 276,423,085\text{원}$] $\{= 600,000,000\text{원}$ 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849,315원($= 600,000,000\text{원} \times 0.05 \times 132\text{일} \div 365\text{일}$) +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20. 4. 2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5,573,770원($= 600,000,000\text{원} \times 0.15 \times 2 + 600,000,000\text{원} \times 0.15 \times 348\text{일} \div 366\text{일}$))이고, 그로부터 3일 후인 제2, 3 송금행위 당시 877,160,790원[$= \text{원금 } 600,000,000\text{원} + \text{지연손해금 } 277,160,790\text{원}$] $\{= 600,000,000\text{원}$ 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849,315원 +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20. 4. 27.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6,311,475원($= 600,000,000\text{원} \times 0.15 \times 2 + 600,000,000\text{원} \times 0.15 \times 351\text{일} \div 366\text{일}$))이다.

6)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가 1,500,00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5호증은 2020년도 3분기 자료이고, 갑 제13호증은 관련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액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7) 종전 아파트에는 K 앞으로 채권최고액 525,6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도 위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자만 변경된 채 그대로 이전되어 설정되었다. 그런데 H조합이 2020. 7. 31.경 F의 K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당시 그 채무액은 443,106,707원이었으므로, 그보다 3개월여 앞선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에도 그 피담보채무액은

443,106,707원 상당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피고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